

# 「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3월 19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3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9년 3월 25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상·하수도 요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다수 국민이 매월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이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부과하는 연체 기간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, 일할부과 방식으로 변경.
- 수도요금에 대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감면제를 도입하여 출산·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

#### 나. 주요내용

- 수도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을 현 고정비율에서 일할부과 방식으로 변경  
(안 제29조)
  - 수도사용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(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금은 미납요금×3/100×연체일수/30일) 납부

○ 다자녀가구 감면제 도입(안 제35조)

- 조례안 제35조제1항5호를 6호로 변경하고 5호 신설: 다자녀 가구 (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인 경우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생활밀착형 요금인 상·하수도 요금을 연체 기간만큼 부과하는 일할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다자녀 가구 감면제 도입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·하수도 연체료에 대해 현 1,000분의 15인 고정비율을 100분의 3으로 변경하여 1개월 미만의 연체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도록 정하고,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조항의 신설이 주요내용입니다.
-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연체료 비율이 1.5%에서 3%로 조정되는 것이므로 체납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(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금= $\text{미납요금} \times 3/100 \times \text{연체일수}/30\text{일}$ )을 징수한다. 다만,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다자녀 가구 (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인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연체금 및 독촉)</p> <p>① <u>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,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35조(요금 등의 감면)</p> <p>① <u>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9조(연체금 및 독촉)</p> <p>① <u>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(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금=미납요금×3/100×연체일수/30일)을 징수한다. 다만,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35조(요금 등의 감면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다자녀 가구 (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인 경우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